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허2392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노 담당변리사 정세성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무
변 론 종 결 2013. 6. 13.
판 결 선 고 2013. 7. 1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3. 11. 2012당159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1)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2004. 11. 4./ 2005. 1. 27./ 제470435호
- 2) 명칭: 누전차단기용 조작노브의 자동 리턴 장치
- 3)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다.
- 4) 특허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특정한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확인대상발명'과 같다.

다. 후등록 특허발명

- 1)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2010. 12. 30./ 2011. 4. 4./ 제1028656호
- 2) 명칭: 누전차단기용 조작노브의 자동복귀장치
- 3)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별지 3] '후등록 특허발명'과 같다.
- 4) 특허권자: 피고, 배수근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6. 8.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2012당1593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2. 11. 27.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별지 2] '확인대상발명' 중 제1항의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에서 제2항의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보정하였다(이하 원고의 2012. 11. 27.자 보정을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

3)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 등 별도의 판단 없이¹⁾ 2013. 3. 11.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한데,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성이 달라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보정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심결을 한 절차상의 위법을 저질렀다.

(나)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들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있는 발명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한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발명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도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 등 별도의 판단이 없었음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2013. 6. 13. 1차 변론조서 참조).

당사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정리되는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심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②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는지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심결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

3. 이 사건 심결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보정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이 사건 심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허법 제140조 제3항에 의하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 의하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그 요지를 변경하더라도 허용된다).

그러므로 특허심판원로서는 특허법 제140조 제2, 3항에 따라 이 사건 보정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요지를 변경한 것인지를 비롯한 보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그 보정이 적법하다면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다

만 이 사건 보정이 특허법 제14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보정이 부적법하다면 부적법한 이유를 밝히고,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정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이 사건 심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준현

 판사 김 신

 판사 손천우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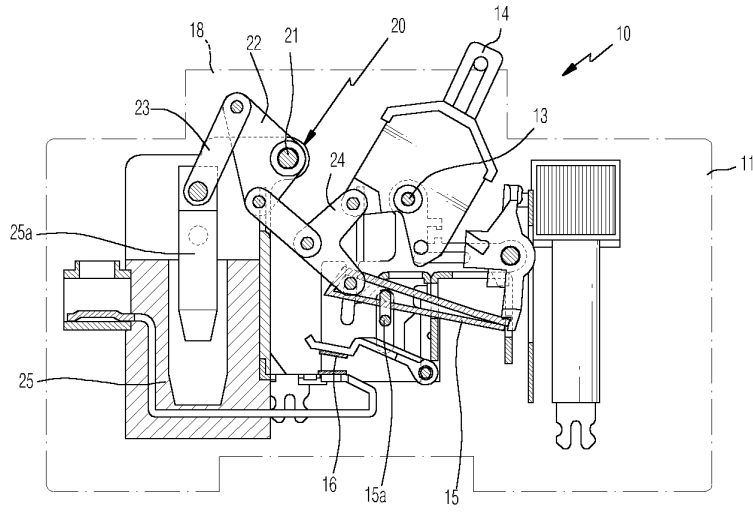
청구항 1. 하우징(11)에 돌출된 상태로 내장되어 외부동력에 의해 회전축(13)을 중심점으로 회전하는 조작노브(14)와, 이 조작노브(14)의 하부측에 힌지식으로 결합된 트립바(15)를 이용하여, 상기 하우징(11)의 바닥면에 구성된 한 쌍의 접촉스위치(16)를 개폐

시키도록 된 누전차단기로서, 상기 조작노브(14)의 측부에 보조축(21)을 따라 회전가능하도록 된 회동레버(22)와 전기적 신호에 따라 작동하는 솔레노이드밸브(25)가 장착되면서, 상기 회동레버(22)의 일측부에 솔레노이드밸브(25)의 플런저(25a)와 힌지식으로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동링크(23)가 힌지식으로 연결되면서, 이 회동레버(22)의 타측부에 조작노브(14)와 트립바(15)에 힌지식으로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피동링크(24)가 힌지식으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누전차단기용 조작노브의 자동 리턴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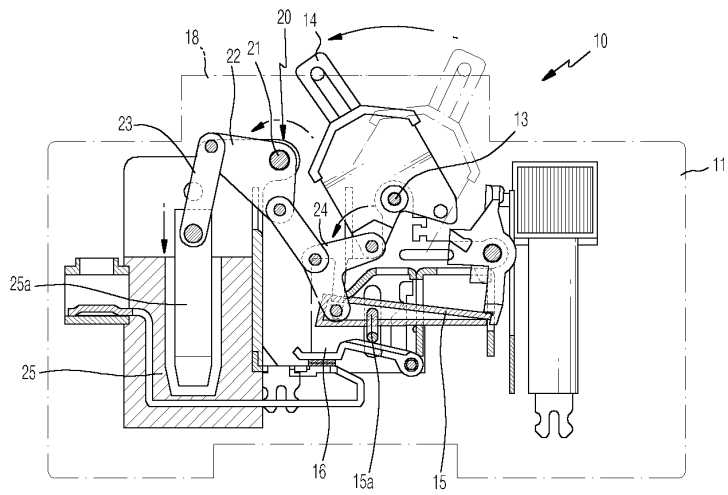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솔레노이드밸브(25)는, 그 설치방향이 수평 또는 수직방향에 위치하도록 고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누전차단기용 조작노브의 자동 리턴 장치.

2. 주요 도면

[도면 2a]



[도면 2b]



<끝>

[별지 2]

확인대상발명

1.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2012. 11. 27.자로 보정하기 전의 것)

가. 발명의 명칭: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

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피청구인이 생산한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 실물 사진.

도 1b 상부커버(100), 본체(200) 및 하부커버(300)로 분해된 상태 실물 사진.

도 2 확인대상발명의 주요 구성 실물 사진.

도 3 확인대상발명의 주요 구성 도면.

도 4a 조작노브(214)가 '온'상태인 경우 도면.

도 4b 트립구동부(227)가 작동되어 트립된 상태의 도면.

도 4c 솔레노이드밸브(225)가 작동되어 조작노브(214)가 '온'되는 경우 도면.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에 관한 것으로서, 누전차단기용 조작노브가 자동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다(도 1a 참조).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는 상부커버(100), 본체(200) 및 하부커버(300)가 결합된 것으로 구성된다(도 1b 참조).

본체(200)에는 조작노브(214), 회동레버(222), 구동링크(223), 피동링크A(224a), 피동링크B(224b), 솔레노이드밸브(225), 트립바(215), 접점스위치(216), 트립바걸림해제부재(226), 트립작동부(227) 등이 수용된다. 또한 본체(200)에는 회로기판(미도시)이 수용되고 본체(200)와 하부커버(300)사이에도 회로기판(미도시), 제어장치 및 표시장치(미

도시) 등이 수용된다.

조작노브(214)는 본체(200)의 수용공간에 설치되며, 그 일부는 상부커버(100)의 구멍을 통해 상부커버 외부로 돌출되어 있고, 외부동력에 의해 회전축(213)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상기 조작노브(214)는 피동링크A(224a)를 통해 회동레버(222)에 힌지식으로 연결되고, 피동링크b(224b)를 통해 트립바(215)에 힌지식으로 연결된다. 피동링크 A(224a)의 일단과 피동링크b(224b)의 일단은 조작노브(214)의 동일한 지점에서 힌지식으로 결합된다. 피동링크A(224a)는 회동레버(222)와 조작노브(214) 사이공간에 설치된 부재로서, 그 일단부가 회동레버(222)에 힌지식으로 결합되며, 그 타단부가 조작노브(214)에 힌지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회동레버(222)는 조작노브(214)와 솔레노이드밸브(225)와의 사이공간에 설치된 것으로서, 보조축(221)를 따라 회전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구동링크(223)는 회동레버(222)와 솔레노이드밸브(225)의 사이에 설치된 판형상의 부재로서, 그 일단부가 회동레버(222)에 힌지식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그 타단부가 솔레노이드밸브(225)의 플런저(225a)에 힌지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솔레노이드밸브(225)는 전자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플런저(225a)를 구비한다. 피동링크B(224b)는 조작노브(214)와 트립바(215) 사이공간에 설치된 일종의 누름부재로서, 그 일단부가 조작노브(214)에 힌지식으로 결합되며, 그 타단부가 트립바(215)에 힌지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조작노브(214)의 하부측에는 힌지식으로 결합된 트립바(215)가 설치된다. 또한 조작노브(214)의 하부측에는 누름봉(215a)이 설치되어 있고 상기 누름봉(215a)은 접점스위치(216)를 '온' 또는 '오프'상태로 유지시킨다.

확인대상발명의 작동과정은 다음과 같다(도 4a 내지 도 4c 참고).

사용자가 조작노브(214)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들어 올리면 조작노브(214)에 힌지식으로 연결된 피동링크A(214a)가 회동레버(222)를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고, 회동레버(222)에 힌지결합된 구동링크(223)을 통해 플런저(225a)는 하향한다. 아울러 조작노브(214)에 힌지식으로 연결된 피동링크B(214b)는 하향하여, 피동링크B(214b)에 힌지결합된 트립바(215)를 누른다. 하향하는 트립바(215)는 누름봉(215a)를 누르고, 누름봉(215a)은 접점스위치(216)를 '온'시킨다. 아울러 트립바(215)는 트립바걸림해제부재(217)에 걸린다. 누설전류 등으로 인하여 이상전류가 발생하는 경우 트립작동부(227)가 작동하여 트립바걸림해제부재(226)를 잡아당기면 트립바(215)는 트립바걸림해제부재(226)로부터 해제되고, 트립바(215)가 상승하므로, 피동링크B(214b)가 상승하고 결국 조작노브(214)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오프'상태가 된다. 아울러 트립바(215)가 상승하면 누름봉(215a)도 상승하여 접점스위치(216)를 '오프'시킨다.

자동 복구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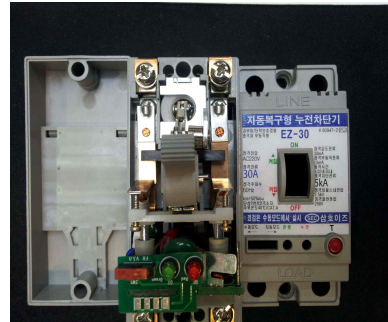
누전차단기는 자동 복구를 위해 누전차단기의 솔레노이드밸브(225)에 복구전류를 공급하면. 솔레노이드밸브(225)의 전자력에 의해, 플런저(225a)가 하방으로 이동하므로, 구동링크(223)를 통해 연결된 회동레버(222)가 반시계방향으로 회동한다. 이로 인해, 회동레버(222)에 피동링크A(224a)를 통해 연결된 조작노브(214)를 밀어 조작노브(214)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어 '온'상태가 된다. 더불어, 조작노브(214)에 피동링크B(224b)를 통해 연결된 트립바(215)가 하향하므로, 누름봉(215a) 역시 접점스위치(216)를 눌러 누전차단기를 '온'상태로 유지시킨다.

라. 도면

[도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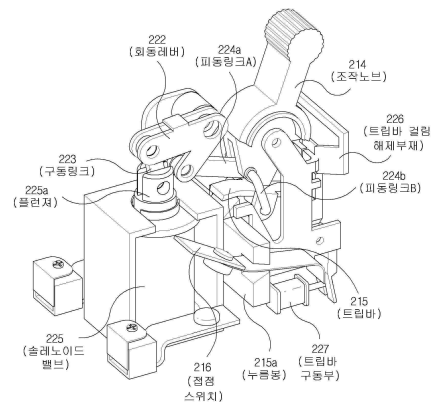
[도 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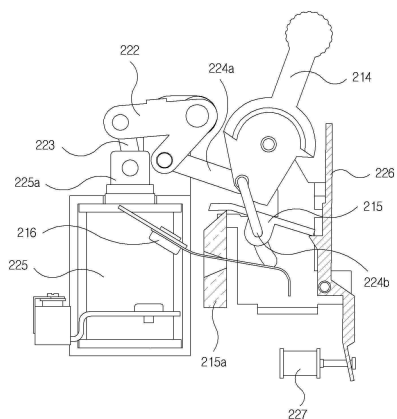
[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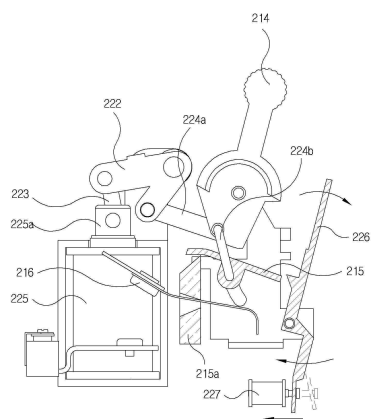
[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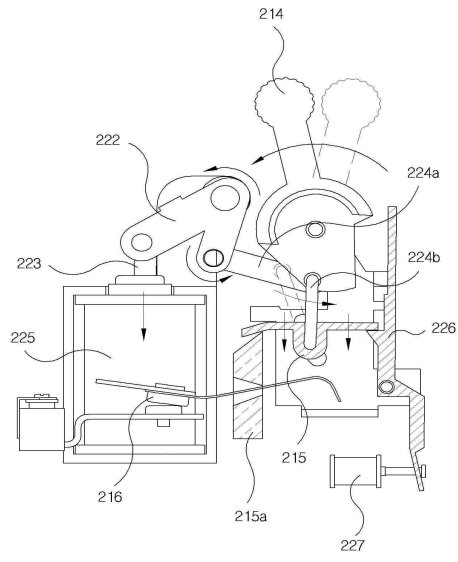
[도 4a]



[도 4b]



[도 4c]



2.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2012. 11. 27.자로 보정한 것, 밑줄 친 부분은 추가된 부분임)

가. 발명의 명칭: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

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피칭구인이 생산한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 실물 사진.

도 1b 상부커버(100), 본체(200) 및 하부커버(300)로 분해된 상태 실물 사진.

도 2 확인대상발명의 주요 구성 실물 사진.

도 3 확인대상발명의 주요 구성 도면.

도 4a 조작노브(214)가 '온'상태인 경우 도면.

도 4b 트립구동부(227)가 작동되어 트립된 상태의 도면.

도 4c 솔레노이드밸브(225)가 작동되어 조작노브(214)가 '온'되는 경우 도면.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에 관한 것으로서, 누전차단기용 조작노브가 자동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다(도 1a 참조).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는 상부커버(100), 본체(200) 및 하부커버(300)가 결합된 것으로 구성된다(도 1b 참조).

본체(200)에는 조작노브(214), 회동레버(222), 구동링크(223), 피동링크A(224a), 피동링크B(224b), 솔레노이드밸브(225), 트립바(215), 접점스위치(216), 트립바걸림해제부재(226), 트립작동부(227) 등이 수용된다. 또한 본체(200)에는 회로기판(미도시)이 수용되고 본체(200)와 하부커버(300)사이에도 회로기판(미도시), 제어장치 및 표시장치(미도시) 등이 수용된다.

조작노브(214)는 본체(200)의 수용공간에 설치되며, 그 일부는 상부커버(100)의

구멍을 통해 상부커버 외부로 돌출되어 있고, 외부동력에 의해 회전축(213)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상기 조작노브(214)는 피동링크A(224a)를 통해 회동레버(222)에 힌지식으로 연결되고, 피동링크b(224b)를 통해 트립바(215)에 힌지식으로 연결된다. 피동링크 A(224a)의 일단과 피동링크b(224b)의 일단은 조작노브(214)의 동일한 지점에서 힌지식으로 결합된다.

피동링크A(224a)는 회동레버(222)와 조작노브(214) 사이공간에 설치된 부재로서, 그 일단부가 회동레버(222)에 힌지식으로 결합되며, 그 타단부가 조작노브(214)에 힌지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회동레버(222)는 조작노브(214)와 솔레노이드밸브(225)와의 사이공간에 설치된 것으로서, 보조축(221)를 따라 회전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상기 회동레버(222)는 복수로 형성되어지되 상부에 각각의 회동레버(222)를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편이 형성되어진다. 또한 상기 양쪽의 회동레버(222) 사이에는 각 회동레버(222)가 서로 이격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빈 공간의 중심축부가 형성되어진다. 상기 피동링크A(224a)와 상기 구동링크는 각각 회동레버(222)의 중심부축에 내에 삽입되어 힌지식으로 연결된다.

구동링크(223)는 회동레버(222)와 솔레노이드밸브(225)의 사이에 설치된 판형상의 부재로서, 그 일단부가 회동레버(222)에 힌지식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그 타단부가 솔레노이드밸브(225)의 플런저(225a)에 힌지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솔레노이드밸브(225)는 전자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플런저(225a)를 구비한다.

피동링크B(224b)는 조작노브(214)와 트립바(215) 사이공간에 설치된 일종의 누름부재로서, 그 일단부가 조작노브(214)에 힌지식으로 결합되며, 그 타단부가 트립바(215)에 힌지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조작노브(214)의 하부측에는 힌지식으로 결합된 트립바(215)가 설치된다. 또한 조작노브(214)의 하부측에는 누름봉(215a)이 설치되어 있고 상기 누름봉(215a)은 접점스위치(216)를 '온' 또는 '오프'상태로 유지시킨다.

확인대상발명의 작동과정은 다음과 같다(도 4a 내지 도 4c 참고).

사용자가 조작노브(214)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들어 올리면 조작노브(214)에 힌지식으로 연결된 피동링크A(214a)가 회동레버(222)를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고, 회동레버(222)에 힌지결합된 구동링크(223)을 통해 플런저(225a)는 하향한다.

아울러 조작노브(214)에 힌지식으로 연결된 피동링크B(214b)는 하향하여, 피동링크B(214b)에 힌지 결합된 트립바(215)를 누른다.

하향하는 트립바(215)는 누름봉(215a)를 누르고, 누름봉(215a)은 접점스위치(216)를 '온'시킨다. 아울러 트립바(215)는 트립바걸림해제부재(217)에 걸린다.

누설전류 등으로 인하여 이상전류가 발생하는 경우 트립작동부(227)가 작동하여 트립바걸림해제부재(226)를 잡아당기면 트립바(215)는 트립바걸림해제부재(226)로 부터 해제되고, 트립바(215)가 상승하므로, 피동링크B(214b)가 상승하고 결국 조작노브(214)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오프'상태가 된다. 아울러 트립바(215)가 상승하면 누름봉(215a)도 상승하여 접점스위치(216)를 '오프'시킨다.

자동 복구과정은 다음과 같다.

누전차단기는 자동 복구를 위해 누전차단기의 솔레노이드밸브(225)에 복구전류를 공급하면. 솔레노이드밸브(225)의 전자력에 의해, 플런저(225a)가 하방으로 이동하므로, 구동링크(223)를 통해 연결된 회동레버(222)가 반시계방향으로 회동한다.

이로 인해, 회동레버(222)에 피동링크A(224a)를 통해 연결된 조작노브(214)를 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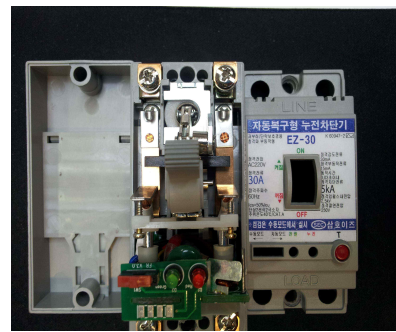
어 조작노브(214)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어 '온'상태가 된다. 더불어, 조작노브(214)에 피동링크B(224b)를 통해 연결된 트립바(215)가 하향하므로, 누름봉(215a) 역시 접점 스위치(216)를 눌러 누전차단기를 '온'상태로 유지시킨다.

라. 도면

[도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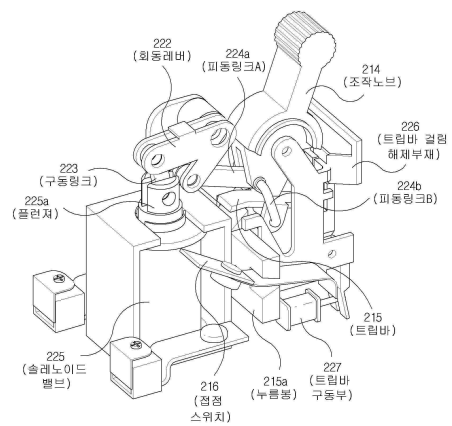
[도 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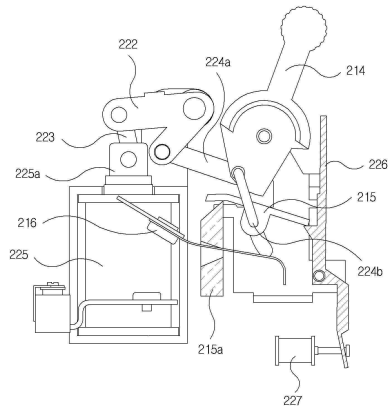
[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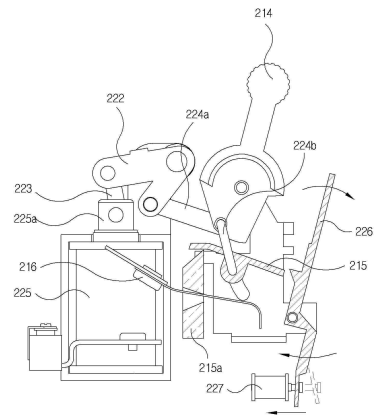
[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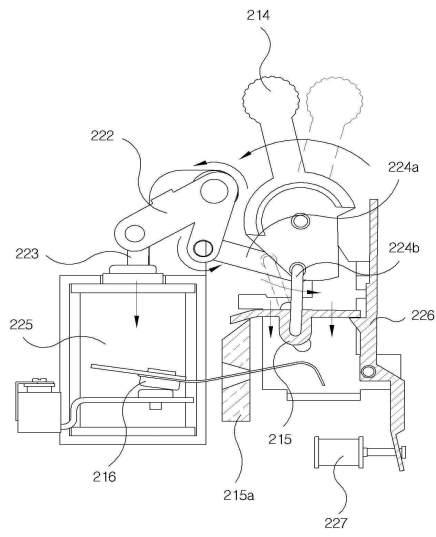
[도 4a]



[도 4b]



[도 4c]



<끝>

[별지 3]

후등록 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누전차단기의 조작노브에 연결되어 조작노브를 리턴시키게 되는 조작노브의 자동복귀장치에 있어서, 상기 누전차단기의 연결대에 장착구로 연결되어지는 회동레버와; 상기 회동레버와 조작노브에 연결한지로 연결되어지는 연결링크와; 상기 회동레버와 슬레노이드밸브의 플런저에 연결한지로 연결되어지는 구동링크를 포함하여 구성되어지며, 상기 회동레버는 양쪽에 복수로 형성되어지며 상부에 각각의 회동레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편이 형성되어지며, 양쪽의 회동레버 사이에는 각 회동레버가 서로 이격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빈 공간의 중심축부가 형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누전차단기용 조작노브의 자동복귀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링크는 일끝단이 조작노브에 연결한지로 연결되어지며 타끝단이 회동레버의 중심축부 내에 삽입되어 연결한지로 연결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누전차단기용 조작노브의 자동복귀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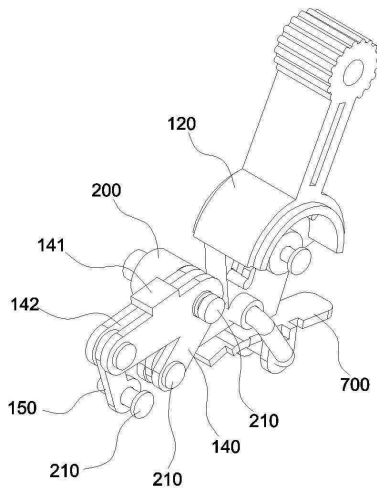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링크는 일끝단이 회동레버의 중심축부 내에 삽입되어 연결한지로 연결되어지며 타끝단이 플런저의 상부에 연결한지로 연결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누전차단기용 조작노브의 자동복귀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노브에는 하우징의 중앙에 형성되어 조작노브를 회동 가능하도록 지지편이 회전축으로 연결되어지며, 상기 조작노브의 하부에는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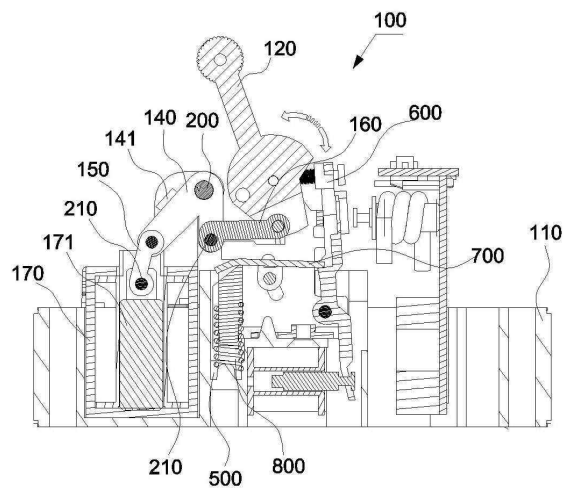
단자를 입력터미널에 연결하기 위해 상기 조작노브의 좌,우 회전에 연동하여 승하강되도록 가압부재가 탄성스프링으로 탄설되어지고, 상기 가압부재의 상단에 연결단자와 입력터미널이 접촉 상태를 제어하기 위해 상기 가압부재를 트립에 구속시키거나 해제하는 걸림부재가 형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누전차단기용 조작노브의 자동복귀장치.

2. 주요 도면

[도면 5]



[도면 6]



<끝>